Smiling Dalseo

-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2. 8.

박 종 길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박종길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근거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과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2006

발의일자: 2022. 8. 18.
발 의 자: 박종길, 김장관, 강한곤, 이진환, 임미연, 서보영

1. 제정이유

○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 낭비를 예방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추진계획의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 등과 표창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등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3)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 및 제6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4. <생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17. <생략>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4. <생략>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략